

신현원창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(안)

「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신현원창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1. 접수기간: 2024년 12월 2일(월) ~ 2024년 12월 17일(화) (평일, 09:00~18:00)

2. 접수방법

가. 방문접수 :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(☎032)718-3822, 담당직원 : 안유화)

나. 온라인접수 : 이메일 접수 (auh941114@korea.kr)

※온라인 접수 시, 접수 확인 전화 필수

3. 모집인원: 40명

4. 자격요건 (가. ~ 다.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

가. 공고일 기준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

나.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자

※주민자치회 연임위원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 2시간 이상 사전 이수

다.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

- 신현원창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
-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신현원창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
- 신현원창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

- 신현원창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, 법인, 단체에 소속된 사람

※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음

※'나'부분의 자격요건 교육과정 이수 여부는 서류접수 마감일 12.17.

'다'부분의 자격요건은 공고일 전(前)일인 12.1.을 기준으로 함

5. 구비서류

-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(붙임3) 1부.
- 개인정보처리동의서 (붙임4) 1부.
-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수료증(3시간)(붙임2 참고)
- 신현원창동 소재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

구 분	제출서류
사업장 대표자	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(사본 가능)
사업장 종사자, 임직원 등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
기타	기타 확인 가능한 서류

6.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

- 「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8조에 따릅니다.

7. 선정방법 : 동 선정위원회에서 면접심사 (12.20.(금) 진행 예정, 변동 시 개별안내)

※ 면접 결과를 통해 순위별로 위원 선정, 60점 기준점수 미달 시 미선정

8.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

- 신청서 접수 → 위원선정위원회 서류심사(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) → 선정위원회 면접 → 위원 선정 → 위원 위촉, 임원진 구성 등 절차 진행

9. 결과통보: 선정 결과 동 홈페이지 게시 및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

10. 기타사항

-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(한차례 연임가능) 당해 모집 건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026. 12. 31.까지입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. 또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, 제22조(위원의 해촉)에 따라 위촉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모집인원보다 접수인원이 많을 시,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.
- 모집인원보다 접수인원이 적을 시, 추가 모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11. 문의사항: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(☎032-718-3822)

붙임 1. 관련 조례

2.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방법
3. 신청서 1부.
4.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.

2024년 12월 2일

인천광역시 서구 신현원창동장

[붙임 1]

[관련조례]

제7조(위원의 자격)

-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으며,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.
 1.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 2.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 3.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(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 자료 제출)
 4.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, 기관, 단체에 소속된 사람
- ②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관,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기관: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
 2. 직능단체: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, 회원명부, 회의록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
 3. 공공단체: 법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

제8조(위원의 선정)

-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천하거나 선정한다. 다만,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,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의 15퍼센트 이상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전체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하는 해당 동 소재 기관, 단체 등에서 추천하거나 동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.
-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 사전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은 최소 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한다.
- 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천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⑤ 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-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제6조의 정수 충원을 위해 신규위촉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. 다만,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.
 1.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.
 2.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. <개정 2024.11.4.>
- ⑧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,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-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.

제18조(위원의 의무)

-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,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
-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,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참석한다.

제19조(정치적 중립)

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,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제20조(위원의 임기 등)

-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연임할 경우에도 제8조의 선정 절차를 따른다.
- ② 연임을 하여 임기가 종료된 경우 제8조의 위원 선정 절차에 따라 신규위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.
- ③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.

제21조(위원의 대우)

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2조(위원의 해촉)

-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.
 1.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여, 그 사퇴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
 2. 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
 3.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,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이 없음이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
 4. 선거운동을 하거나,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구청장에게 발견된 경우
-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1.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 2.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 3.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③ 주민자치회는 그 위원이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위원의 해촉 여부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 여부의 대상이 된 위원은 제3항의 회의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. 다만,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.
- ⑤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을 하려는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방법

1. 교육일정 : 연중 상시

2. 교육과정

· 신규위원 : 인천형 주민자치학교(주민자치위원용) 4시간

※ 4시간 모두 이수하여야 이수증 발급

· 연임위원 : 자치분권과 주민참여의 이해 2시간

3. 교육내용 : 신규 주민자치 위원 의무교육(3시간) 및 현 주민자치위원 연임을 위한

보수 교육(2시간) 지원 교육으로 주민자치회 기본 이론 및 사례학습

4. 교육방법

구분	내용	세부내용
1단계	접속 및 회원가입	① 인천e배움캠퍼스(incheon.hunet.co.kr) 접속 및 회원가입 ※ 모바일APP 가능 (모바일에서 위 사이트 방문 시 APP 설치화면 보임)
2단계	수강 신청	①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 "주민자치" 검색 ② "인천형 주민자치교육(주민자치위원용)" 혹은 ⇒ 신규위원 "자치분권과 주민참여의 이해" 신청 ⇒ 연임위원
3단계	동영상 학습하기	① 상단 메뉴 <나의 강의실(마이페이지)> 클릭 → <학습하기> 클릭 ② 이후 순차적으로 학습 ※ 동영상 시청 중 중단되었을 경우 중단된 시간부터 다시 재생
4단계	시험보기 ※ "인천형 주민 자치교육"만 해당	① 상단 메뉴 <나의 강의실(마이페이지)> 클릭 → <학습하기> 클릭 → <시험> 클릭 → <확인 후 응시하기> 클릭 → <응시하기> 클릭 ② 연결된 페이지에서 오픈 북 방식으로 시험에 참여 ③ 시험완료 후 <미리보기 후 제출하기> 클릭 → <답안 제출하기> 클릭 ※ 40점 미만일시 재시험 가능(1회)
5단계	수료증 발급 및 제출	① 상단 메뉴 <나의 강의실(마이페이지)> 클릭 → <강의이력 (수료증발급)> 클릭 → 출력 → 각 해당 행정복지센터 주민자 치담당에게 제출 ※ 시험 응시 후 익일 수료증 출력 가능

5. 문의처 :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(1588-6559)

신현원창동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(수집·이용·제공) 동의서

서구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든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·관리되며,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되며, 관련 업무처리 용도 외에는 절대 이용 및 제공되지 않습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
예 아니오

1)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

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가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: 사진,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주민등록상 주소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, 직업 등

나. 개인정보 수집방법: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요건 확인 및 운영 관리

2)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목적 및 보유·이용기간

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4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

사업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.

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	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	보유 및 이용기간
사진,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주민등록상 주소, 이메일주소, 휴대전화번호, 직업 등 인적사항	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,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, 사업 안내사항 전달, 통계수집 및 연구, 사업관리	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부터 4년

※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분과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됨

2.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

예 아니오

제공받는 자	인천광역시 등 행정기관,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
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	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통계수집, 정책 개선 위한 연구 기초자료,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정보제공, 위원 상호 간 정보제공
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	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주민등록 주소, 연락처, 직업, 이메일 주소
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 기간	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중 및 임기 종료 후 2년

20 년 월 일

동의자 : (서명)

주민자치위원 자격 여부

주민자치위원 신청과 관련하여 「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의 모집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을 시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위 사항을 확인하였음

20 년 월 일
확인자 (서명)